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
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24
----------	-----

2019. 12. 16. (월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: 2019년 11월 22일

다. 회부일자: 2019년 11월 29일

라. 상정일자: 2019년 12월 5일

(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교육국장 김영미)

가. 제안이유

-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학교서열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충주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충주시를 추가함(안 제2조)
- 충청북도교육감의 충주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는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(부칙 제2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최경분)

- 본 조례 개정안은 충주시(읍·면 지역은 제외)를 ‘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’ (고교평준화 지역)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
 - 본 조례 제3조는 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·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·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”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, 개정예 앞서 실시한 충주시 고교평준화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인원의 77.14%가 지정에 찬성하여 해당 규정의 개정 요건을 충족하였음
- ※ 조례 개정예 앞서 2019년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충청지방행정 발전연구원이 주관하여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~2학년 학생, 학부모, 교원, 학교운영위원,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주시 고교평준화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

구분	대상인원	투표인원	투표율	찬성	찬성율	무효	비고
총계	11,874명	11,473명	96.62%	8,696명	77.14%	200명	

- 본 조례 개정안은 학교서열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청주시(읍·면 지역은 제외한다)” 를 “청주시(읍·면 지역은 제외한다), 충주시(읍·면 지역은 제외한다)” 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조의 “충주시(읍·면지역은 제외한다)” 는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<u>청주시(읍·면 지역은 제외한다)</u>로 한다.</p>	<p>제2조(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청주시</u> (<u>읍·면 지역은 제외한다</u>), <u>충주시(읍·면 지역은 제외한다)</u>---.</p>

관계법령

□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[시행 2019. 9. 24.] [대통령령 제30088호, 2019. 9. 24, 일부개정]

제77조(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) 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.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(제90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)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.

1. 학교 간 거리,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
2.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
3.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
 - 가. 학교군 설정
 - 나. 학생배정방법
 - 다.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
 - 라.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
 - 마.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·특성화 계획
4.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·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. 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시·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·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제3호·제4호 및 제3항의 타당성 조사,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·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